#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554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경우, 김제리,

김희걸, 박순규, 양민규, 이광호, 이성배, 이호대, 임종국, 정재웅, 채인묵,

최웅식 의원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「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,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혁신금융서비스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,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(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4호, 같은 조제5호)
- 나.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(국제금융컨퍼런스) 개최 등 추진 근거 마련(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)
- 다.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혁신금융서비스"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 융서비스의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4. "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"란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.
- 5. "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"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
- 4.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

제16조제2항 중 "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"을 "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"로 한다.

제17조,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,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, 제17조, 제 18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 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- 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
- 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
- 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- 4.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 다. 단,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

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0조(표창)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
1. · 2. (생략)	· 1.·2. (현행과 같음)			
<신 설>	3. "혁신금융서비스"란 「금융혁신			
	지원 특별법   제2조제4호에 따라			
	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・			
	방식・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			
	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			
	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			
	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			
   <신 설>	4. "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"란			
	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제			
	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			
	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			
	를 의미한다.			
   <신 설>	5. "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"이란			
	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			
	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			
	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			
	한다.			
<u>3</u> . ~ <u>8</u> . (생 략)	6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			
	지와 같음)			
제7조(교육훈련자금의 지원) ① (생	제7조(교육훈련자금의 지원) ① (현			

략)

-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 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 요되는 자금에 한한다. <u><단서 신</u> 설>
- 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)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 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・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<u>3</u>. (생 략)
- ② (생 략)
- 제16조(금융전문인력의 양성) ① 7 (생 략)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앵과 (실금)
②
단, 제16조제1
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
성기관은 제외한다.
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
환경 조성) ①
<del></del> .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
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
4.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
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
<u>5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금융전문인력의 양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한
_ 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
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

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 다.

- 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 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 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 설
- 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 하기 위한 시설
- 4.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, 혁신금융서비 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・징수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운

	영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
	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
	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
	관리 •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
	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
	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
	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
	한 조례」를 따른다.
   제17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(생 략)	제19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(현행
	제17조와 같음)
<신 설>	제20조(표창)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
<u> </u>	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
	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
	따라 표창할 수 있다.
	<u> </u>
제18조(행정지원 등) (생 략)	제21조(행정지원 등) (현행 제18조
<u>제10조(항경기된 8)</u> (경 위)	와 같음)
<u>제19조(시행규칙)</u> (생 략)	제22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9조와
	같음)

##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첚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(운영위원회 운영)에 따라 비용 발생
  - ※ 제15조제3호 및 제4호, 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는 예산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(단위: 백만원)

조문	사업명	2020년 예산액
제15조제3호	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	4,910
제15조제4호	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	290
제16조제2항	금융전문대학원 설립·운영 지원	2,500
제17조제1항제1호	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 및 운영	1,251
제17조제1항제2호	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 및 운영	800
제17조제1항제3호	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	4,910

- ※ 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는 현재 서울핀테크랩 운영사무를 케이액셀러레이터 주 식회사에 위탁 운영중임
- ※ 제20조(표창)는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 수여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99,000천원(연평균 19,800천원)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9,8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- 제17조제1항제1호(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), 제2호(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), 제3호(서울핀테크랩) 등 3개 시설별로 10명(담당과장 1명, 민간위원 9명)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(정기 2회, 임시 2회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
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= 99,000천원(연평균 19,800천원)
  - 총비용 = 3개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세입	_	-	_	_	_	-	_
	소계(a)	-	-	-	-	-	_
세출	운영위원회 운영 (제17조제4항)	19,800	19,800	19,800	19,800	19,800	99,000
	소계(b)	19,800	19,800	19,800	19,800	19,800	99,000
	총 비용(b-a)	19,800	19,800	19,800	19,800	19,800	99,000

- 위원회 운영비용: 참석수당 81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18,000천원=99,000천원
  - 참석수당 : 수당단가 150천원 $\times 9$ 명 $\times$ 연 4회 $\times 3$ 개 시설 $\times 5$ 년=81,000천원
    - ※ 참석수당 단가: 「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
    - ※ 지급인원 : 위원 10명 중 담당 과장(1명)은 제외
  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 $30천원 \times 10$ 명 $\times$  연  $4회 \times 3$ 개 시설 $\times 5$ 년=18,000천원
    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 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조사분석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박주용

**28** 02-2180-7943

e-mail: pjooyong@seoul.go.kr